의 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 또는 제출자 : 대전광역시장

2. 건 명: 대전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

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

3. 안 건 요 지:별 첨

4. 검 토 의 견: 별 첨

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7년 7월 19일

행 정 자 치 위 원 회

전문위원 이 희 배

대전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

본 조례 안은 2007년 6월 29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7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1. 제안이유

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 중복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조문과 일부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에 비서관 및 비서에 관한 사항을 별도 규정함(안 제6조).

3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 조례 안은

「지방공무원법」에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개정 하려는 것임. ○ 본 개정 조례 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
안 제2조 내지 제4조에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와 임용자격 및 임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,

안 제5조 내지 제6조에서는 신규임용 최저연령과 근무상한 연령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,

안 제7조 내지 제8조에서는 직권면직과 휴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.

○ 본 조례 안 검토결과

「지방공무원법」 등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내용을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써,

관련 법령에 중복된 내용은 최대한 억제하고, 자치법규 성문에 필요한 조문만을 반영하여 조례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